

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40,207,748	16,206,232
일반회계	514,186,346	15,425,590
특별회계	26,021,402	780,642
기타특별회계	26,021,402	780,642
상수도사업	3,402,872	102,086
하수도사업	2,502,897	75,087
수질개선	7,343,720	220,312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94,187	14,826
의료급여기금	600,437	18,013
소득특화사업	5,245,796	157,374
농공단지조성사업	1,580,081	47,402
공영개발사업	4,729,923	141,898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21,489	3,64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609,329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